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55 발의연월일: 2025. 3. 26.

발 의 자:김동아·허성무·임호선

박균택 • 추미애 • 김남근

김영호 • 박정현 • 이정문

김문수 · 허종식 · 한준호

김준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,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7조 등).

법률 제 호

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진단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.

제31조제1항제1호 중 "제17조제4항을"을 "제17조제5항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산업재산진단기관부터 적 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17조(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	제17조(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			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	
<u><신 설></u>	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			
	취소된 진단기관은 지정이 취			
	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			
	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.			
<u>④·⑤</u> (생 략)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			
	과 같음)			
제3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31조(과태료) ①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			
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			
부과한다.	<u>,</u>			
1.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	1. <u>제17조제5항을</u>			
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				
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				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	